

회계감사 및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책임에 관한 성명서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조합비의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과 회계질서의 확립은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회계감사와 회계보고 역시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회계감사 및 조합비 사용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지회장의 회계감사 및 회계보고 의무

지회장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 금전출납부, 각종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조합비가 금속노조 규약과 지회 회계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감사 결과를 사실대로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대의원회의에 보고되어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지회장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에 서명하였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지출결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합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특히 이후 조합비의 부적정한 사용이나 횡령 의혹이 확인되었다면, 당시 지회장이 실제로 어떤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회계자료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서명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를 넘어 지회장으로서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 금속노조 및 지부 환급금의 사용 경위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특별회계감사 과정에서 김00 전 사무장은 금속노조 및 지부로부터 환급받은 조합비를 상집간부 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00 전 사무장 개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환급금의 정확한 금액과 입금 시점
- ② 환급금의 실제 수령 및 관리 주체
- ③ 환급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 ④ 상집간부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
- ⑤ 사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
- ⑥ 실제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

⑦활동비의 지급 및 회계처리 과정

⑧해당 사용이 지회 회계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00 전 사무장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00 전 지회장은 당시 상집간부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김00 전 사무장의 주장처럼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상집간부 활동비로 지급·사용되었다면, 당시 지회장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용인지, 상집간부 활동비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사안의 핵심은 해당 조합비가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김00 전 사무장의 주장처럼 상집간부 활동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 ① 금융거래 내역
 - ② 회계장부 및 금전출납부
 - ③ 지출결의서 및 승인자료
 - ④ 활동비 지급 내역
 - ⑤ 관련 회계증빙
 - ⑥ 당시 상집간부들의 진술
 - ⑦ 당시 지회장 및 회계담당자의 인식과 관여 여부
-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상집간부 활동비로 사용되었다면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지급 결정은 누가 하였는지, 해당 지급이 회계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조00 전 지회장과 김00 전 사무장은 특별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별회계감사는 김00 전 사무장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4.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해 책임 소재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금속노조 및 지부로부터 환급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된 시점까지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당시 지회장과 상집간부들이 해당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누가 사용을 결정하거나 승인하였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해당 자금의 정확한 사용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00 전 지회장에 대해서는 김00 전 사무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조합비 또는 환급금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②해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승인 또는 묵인하였는지
- ③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거래내역을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 ④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는지
- ⑤대의원회에 실제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하였는지

이는 당시 지회장으로서의 회계감사 및 회계관리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사실관계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 ①환급받은 조합비의 정확한 금액과 전체 자금 흐름
 - ②해당 금원의 실제 사용처와 최종 수령자
 - ③금원의 사용을 결정·지시·승인한 사람
 - ④실제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사람
 - ⑤당시 지회장 및 상집간부들의 인식과 관여 정도
 - ⑥정기 회계감사에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여부
 - ⑦회계감사보고서 및 대의원회 보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해당 금원의 사용이 금속노조 규약 및 지회 회계세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각 관련자의 행위와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합비의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되었다면 단순히 실제 조합비를 사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사용을 결정하였는지, 누가 지시하거나 승인하였는지, 누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누가 실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누가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지회장이 정기 회계감사와 회계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합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역시 엄중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합비가 조합원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통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7.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 대한 요청

이에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금속노조 징계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 전원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①김00 전 사무장이 실제로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본인의 주장처럼 상집간부 활동비로 사용하였는지를 금융거래 및 회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②해당 금원의 사용을 결정·지시·승인 또는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실제 금원을 지급받은 상집간부가 있다면 지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사유 및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조00 전 지회장이 해당 금원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거래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당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와 대의원회의 보고 내용이 실제 회계처리 및 자금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관련 자료의 미제출 또는 불충분한 제출이 단순한 자료 미비인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은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엄정한 책임과 징계를 요청합니다.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조합비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김00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이 구형된 바 있는 만큼, 조합비의 횡령 또는 부적정한 사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의 재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조합비 횡령 및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속노조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조00 전 지회장에 대해서도 당시 지회장으로서 회계감사 및 회계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조합비 및 환급금의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사용을 승인·지시 또는 묵인하였는지, 또한 상집간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횡령금원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00 전 지회장이 조합비 집행의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속노조 규정에 따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이나 회계감사 및 회계보고 의무의 중대한 위반, 조합비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한 관여 또는 묵인 등이 확인된다면, 그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9.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통제 및 징계권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 여부는 형사법상 범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조합 간부로서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는지, 조합의 재정 및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약 및 규정상 재정관리 의무 위반이나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지회장에 대하여 단순히 횡령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책임과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온시스템 통합규칙 제28조는 지회장에게 재정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 지회장은 실제로 해당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조합 자금이 수령·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자신은 실무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재정 집행권자로서의 권한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일부 재정 실무를 전 사무장 등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 위임만으로 지회장에게 부여된 재정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실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지회장은 조합비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회장은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감사 과정에서 조합비의 입·출금 및 집행 내역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상 착오의 문제를 넘어 재정 집행에 대한 지회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조합 자금이 처리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정기적인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지회장으로서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 지회장이 실무를 전 사무장 등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정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분기별 회계감사 및 확인·서명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해당 과정에서 조합비의 입·출금 내역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였는지, 회계자료와 금융자료를 대조·검토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지회장 본인 명의의 계좌에 조합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계좌가 어떠한 경위와 근거에 따라 조합 자금의 처리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를 조합 자금의 처리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 또는 결정이 있었는지, 당시 조합 내부에 그러한 처리 방식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관행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실무자가 처리하였다.’거나 ‘본인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조합 자금의 처리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이 당연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 금융자료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실제 자금의 흐름과 당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지회장 및 전 사무장은 기존 3억 6천만 원 환입 건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3기 집행부는 위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합비의 입·출금 내역 및 관련 회계자료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약 1,575여만 원의 조합비가 조합비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해당 금원의 정확한 처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지부에 약 1,575여만 원의 송금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부에서는 집행부가 요청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만을 지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합비 입출금 내역을 다시 대조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금원이 조합비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금원의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조합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 지회장 및 전 사무장에게 약 1,575여만 원에 대한 환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지회장과 전 사무장은 해당 금원의 환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합비의 미입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해당 금원의 처리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나 자발적인 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집행부는 조합원의 소중한 조합비가 어떠한 경위로 처리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합 재산을 보전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사고소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약 1,575여만 원의 미입금 건은 기존 3억 6천만 원 환입 건에 단순히 포함되는 금원이 아니라, 기존 환입 건과 관련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입·출금 내역을 재검토하던 중 별도로 확인된 회계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기존 3억 6천만 원과 구분하여 실제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조합비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경위 및 최종적인 사용처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인된 약 1,575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부결의금에서 지원된 금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시 해당 금원이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조합원 1인당 매월 3,000원의 지부결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비 및 지부결의금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는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지부결의금의 지출을 제한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합원의 회비로 조성된 재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 집행 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하여 400만 원의 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비의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수사·재판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조합 재정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분쟁과 의혹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며, 징계위원회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노동조합 내부의 규정 위반 여부와 재정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약 1,575만 원의 미입금 사실이 확인되고 집행부가 해당 금원의 환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회장 및 전 사무장은 상당 기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당 사안은 형사고소 및 경찰 조사 절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5년 12월 28일 경, 전 사무장은 별도의 협의나 집행부와 사전 조정 없이 약 1,57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회 일반 회계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13기에서 14기로 집행부의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해당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당초 집행부의 환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그 환입의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전 사무장이 지회 간부에게 해당 금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는 만큼,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 의미 및 실제 자금 처리 과정과의 관련성 역시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사후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금원이 왜 조합비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는지, 어떠한 경위로 본인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처리되었는지, 그 금원의 최종적인 사용 및 보관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는지, 문제 제기 이후 조합 재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의 제출과 사실관계 규명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입금 사실이 확인된 이후 즉시 소명하거나 환입 한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해당 금원을 입금한 점은, 조합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본 사안이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분쟁이 아니라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된 조합 재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집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전 지회장은 규정상 재정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3억 6천만 원 환입 건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약 1,575만 원의 조합비 미입금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금원의 처리 경위에 대한 확인 및 환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절차까지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특별회계감사 결과 및 관련 금융·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서 전 지회장 및 전 사무장에 대한 재정관리 과정, 규정상 의무 위반 여부, 재정 집행 및

관리·감독 책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조합 자금의 처리 경위, 고소 진행 중 2025년 12월 28일 입금한 약1575만원의 최종적인 사용처, 환입 요구 이후의 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규정 위반 또는 조합 간부로서의 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중한 조합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합의 재정관리 체계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사안의 사실관계가 끝까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 대전지회는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본 사안의 진상이 끝까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의 철저한 규명과 조사, 강력한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 대전지회 확대간부 일동 **2026. 09. 14. (서명 생략)**

서명 불참 대의원 : 5구역 대의원 박종근, 금속 대의원 박종우